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신설 등》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10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1501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신설 등(안 제10조의4, 제105조제2항제1호의4 및 제111조제4항 신설)	3
나. 부칙	15

I.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1501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

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의4 신설).

3. 검토의견

가.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신설 등(안 제10조의4, 제105조제2항제1호의4 및 제1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u> ①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1의3. (생략)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2. ~ 13. (생략) ③ (생략) 제11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1의4.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2.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까지----- ----- ----- ----- -----.

개정안은 측량업자¹⁾로 하여금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10조의4 신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4항 신설).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안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일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의4 신설).

(1)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신설(안 제10조의4 신설)

이 법은 2009년에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으로, 공간정보²⁾의 한 분야인 측량 및 측량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0조의2³⁾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0조의3⁴⁾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및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공시 규
정은 분산되어 있던 측량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부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공공발주 등의 발주자가 측량업체를 객관적 역량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측량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여부는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정보 등은 자발적으로 제출된 경우
에 한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공시된 측량업자는 전체 측량업자의 3%에 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
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치지 못하는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시 제도를 통해 시장 전반의 역량과 우수 측량업자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표 1〉 측량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시 현황

(단위: 개,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측량업 등록업체 현황	3,890	3,984	4,093	4,130	4,133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시 현황	84	71	80	82	78

※ 자료: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이에 개정안은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선정 등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측량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대상 업역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근거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실적 또는 사업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⁵⁾ 등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측량업자로 하여금 측량용역 계약의 체결·변경 및 측량용역 완료 사실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적 성격이 있는바,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과 측량업자의 부담 증가 정도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⁷⁾은 건설엔지니어링⁸⁾ 용역의 계약 체결·변경 및 준공 사실 통보 의무의 이행 주체

6)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통보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사업실적 관리에 관한 유사 입법례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현행	개정안			
제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시공능력 평가	실적 관리	영업실적 제출
이행 주체	◦ 측량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측량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발주청 및 인·허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의무 여부	임의 (평가 신청자)	의무	임의 (평가 신청자)	의무	의무
주기	◦ 측량용역 수행 실적 등: 매년 2월 15일	◦ <u>계약 체결·변경 및 완료 사실</u> : 각 10일 이내	◦ 사업실적 등: 매년 2월 15일	◦ <u>계약 체결·변경 및 준공 사실</u> : 각 10일 이내	◦ 영업실적: 매년 1월 10일 ◦ 분양실적: 매월 5일
내용	◦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 실적 ◦ 기술자 보유현황 ◦ 재무상태 ◦ 신인도,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	◦ 미정 (부령으로 규정)	◦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 기술자 보유현황 ◦ 재무상태 등	◦ 계약현황(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 ~~참가건설인~~ 의 현황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업자~~ 의 현황 ◦ 하도급 계약 현황	◦ 전년도 영업실적 ◦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은 건설공사에 관한 ‘측량’을 포함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용역 실적이 제한적으로 파악되어 용역을 발주하는 행정기관 등이 측량업자의 실적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측량용역 계약 자료의 제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설문조사에서 영세 측량업체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측량용역 실적 제출 의무의 이행 주체를 ‘발주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표 3〉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매우 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응답 ¹⁾	10건(8%)	24건(18%)	31건(23%)	29건(22%)	38건(29%)
찬반 또는 보완 주요 의견 ²⁾	◦ (찬성) 측량산업의 전문성·투명성 유지 등을 위해 산업통계 정확성 제고 필요 ◦ (반대) 업계의 영세성, 잦은 계약변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 가중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 ◦ (보완) 공공발주에 한하여 자동 제출 시스템 마련 및 민간발주는 임의 제출로 유지 -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 제출 주기를 1년 단위로 조정 -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30일 등으로 완화				

주 1) 조사개요

◦ (실시주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조사기간) 2026. 1. 13. ~ 1. 19. (7일간)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사(1,200개사 중 132개사 회신)

2)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편, 상기 산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측량산업의 전문성·투명성 유지 등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업계의 영세성 및 잦은

계약변경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측량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측량용역 관련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도 제시되었음.

이에,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강화할 공익적 필요성과 측량업계의 사익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의무 이행의 주체(영세 측량업자 제외 여부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 의무 부여 등) 및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측량용역의 범위(일정 금액 이상 또는 공공발주로 한정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권한의 위탁(안 제105조제2항제1호의4 신설)

안 제105조제2항제1호의4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안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⁹⁾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¹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

9)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05조제2항제1호의3¹¹⁾에서 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업무에 관한 권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05조제2항제1호의3은 위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접수”에 더하여 접수된 자료의 “내용의 확인”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05조제2항제1호의4도 통일적으로 “자료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립할 수 있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과태료(안 제111조제4항 신설)

안 제111조제4항은 안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형벌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채택함으로써 제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다만, 3명 미만의 영세 업체가 전체 측량업체의 66.3%에 달하는 업계 구조를 감안할 때 측량업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과태료 부과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제재 필요시 행정지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적절하다	필요성은 있으나 과도하다	부당하다	잘 모르겠다
응답 ¹⁾	24건(18%)	26건(20%)	77건(58%)	5건(4%)
주요 우려 의견 ²⁾	◦ 단순 행정착오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분 ◦ 소규모 업체에 대한 부담 가중 ◦ 행정지도 방식으로 운영 가능 ◦ 고의·비고의 구분의 어려움			

주 1) 조사개요 : <표 3>과 동일

2)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편, 안 제111조제4항이 입법화되는 경우, 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체결 등에 관한 신고 의무의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량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의 정비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10조의4¹²⁾의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량용역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체결된 측량용역 계약 등에 관하여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한편, 안 부칙 제2조의 제목은 안 제10조의4와 달리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신고”를 안 제10조와 통일하여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	--------------

12) 「개정안」

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실적신고 관련 유사입법례 및 측량업 등록 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 실적신고 관련 유사입법례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u>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 <u>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통보·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 <u>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u>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u>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 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② 삭제 <1999. 4. 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u>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측량업체 등록현황**(`25.12.31. 기준, 측량업종합관리시스템)

등록업체 합계	측량업종 합계	측량업 업종별 등록업체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공간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제작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측량
4,133	6,144	1,023	2,837	209	133	60	20	90	280	633	275	584

□ **등록업체별 인력 현황**(`25.12.31. 기준, K-geo 플랫폼)

구분	등록업체(비중)	구분	등록업체
계	4,133(100%)	6인 이상 10인 미만	916(22.2%)
3인 미만	2,753(66.6%)	10인 이상 15인 이하	176(4.2%)
3인 이상 5인 이하	198(4.8%)	16인 이상	90(2.2%)